

##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5.16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, 2014.5.16, 일부개정]



서울대학교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, 2012.7.12.>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,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 (시행세칙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

**제4조 (지원대학)**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 (지원자격)**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"지원자"라 한다)은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.7 이상, 대학원과정은 3.3 이상인 자로 한다.

**제6조 (수학신청)** ①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1. 수학신청원 (별지 1호 서식)
2. 지도교수 추천서
- 3.- 4.<삭제> 2002. 1. 7

②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**제7조 (수학허가)** 수학은 소속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
**제8조 (등록 및 학기의 인정)** ①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,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

**제9조 (교과목의 이수)**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수학신청의 취소)** ①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 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 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.

③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 (취득학점)**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,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, 2009. 8. 7.>

②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(원)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**제12조 (수학기간)**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, 석 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2. 1. 7>

**제13조 (학점의 인정 기준)**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03. 7. 28>

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3. 7. 28>

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 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03. 7. 28>

**제14조 (학점인정 절차)**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②대학(원)장은 소속대학(원)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

③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"○○대학(교) 수학 이수학점"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.

###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**제15조 (지원자격)**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**제16조** (지원시기)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**제17조** (수학허가)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18조** (정원)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(부)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.

**제19조** (등록 및 수업료) ① (등록 및 수업료) ①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 [개정 2013.2.12.]

② 수업료는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. 다만,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다.[개정 2013.2.12.]

③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④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20조** (수강신청)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**제21조** (수학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22조** (취득학점)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02. 1. 7> ①- ②<삭제> 2002. 1. 7

**제23조** <삭제> 2002. 1. 7

**제24조** (취득학점의 처리) ①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**제25조** (수강증의 발급)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**제26조** (시설물의 이용)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,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**부칙** <제1956호,2014.5.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